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92

발의연월일: 2021. 6. 4.

발 의 자:최형두·강기윤·권명호

김성원 · 김영식 · 박성민

엄태영 · 이종성 · 정운천

태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사찰의 주지는 운영 및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'특별자치시장'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4 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"광역시장·도지사"를 "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)	제4조(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)
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·관리	①
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	
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	
표자의 추천서를 첨부(사찰이	
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	
외한다)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 <u>광역</u>	<u>광역시</u>
<u>시장·도지사</u> ·특별자치도지사(이	<u>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</u>
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거쳐	
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	
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